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장 애 인 복 지 과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다.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2) 위　　치 : 금오산로 5길 10-4

(3) 규　　모 : 사용 연면적 373.8㎡(1 ~ 2층)

(4) 주요시설

구분	연면적	주요시설	비 고
1층	186.9㎡	프로그램실, 휴게실, 상담실, 사무실	
2층	186.9㎡	공동작업장, 주방	

라. 위탁사무

(1) 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2)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건강증진 등 프로그램 운영

(3) 일상생활 훈련, 지역사회 적응 훈련 및 자립상담 등

마. 위탁기간 : 2027. 6. 1. ~ 2032. 5. 31. (5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51,931천원　* 2027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251,931	229,778	22,153	종사자 5명 기준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아.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자. 성과평가 결과 : 탁월(96점)

3. 부서의견

○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12명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응훈련, 취업 알선,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7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위탁사무 감사 결과

(1)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평가점수 : 96점

○ 총평

- 사업계획 수립, 인력 및 성과관리, 센터 운영 및 관리, 지역사회 협력 등 전반적인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수행 능력을 보임.
-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응급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이용자 체험활동 지원 및 시설 기능 보강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2026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 감사결과 : 주의 1건

○ 주요 지적사항 : 지출 증빙서류 누락

○ 조치사항 :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지출 증빙자료(사진 대지 등)를 첨부하고 관련 서류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함.

별첨 1.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부.

2. 2026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1부.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위탁사무명 :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 (사)경북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 위탁기간 : 2022. 5. 21. ~ 2027. 5. 31. (5년)

○ 사 업 비 : 235,988천원 * 2026년 예산 기준

○ 평 가 자 : 3명(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평가범위 : 위탁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센터 운영 및 위탁사업 추진 전반

○ 평가항목

- 공통분야(40) : 사업계획, 인력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 개별분야(60) : 센터운영 및 관리, 만족도 제고 노력,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개발
- 감 점(-5) : 임금체불, 세금체납, 법정부담금 납부의무 미준수, 위탁사무 지연처리, 지도·점검 지적사항 미이행

부문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감점
평가항목	사업 계획	인력 관리	예산 관리	성과 관리	센터운영 및 관리	만족도 제고 노력	지역사회 협력 및 자원개발	
배점(100점)	10	10	10	10	20	20	20	-5
평점(96점)	10	10	8	10	20	18	20	해당없음

2. 평가결과

○ 평가점수 : 96점

○ 총 평

- 사업계획 수립, 인력 및 성과관리, 센터 운영 체계, 지역사회 협력 등 전반적인 평가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수행 능력을 보임
-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응급상황 대비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이용자 체험활동 지원 및 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자원 개발 노력이 돋보임

2026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위탁사무 :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 감사일시 : 2026. 5. 21.

○ 감사범위 : 위탁업무 관리 및 운영 실태 전반(2025. 1. ~ 2026. 3.)

○ 감 사 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장 등 3명

○ 감사방법 : 실지감사(서류 및 시설 확인 현지방문 점검)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 주의 1건

○ 처분내용

분 야	감사내용 (검토 또는 처분사항)	조치계획 (의견)	비 고
예산·회계	지출 증빙 서류 누락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지출 증빙 자료(사진 대지 등) 첨부 및 관리 철저	주의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 비용추계의 전제

○ 종사자 5명 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매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지침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229,778	238,969	248,528	258,469	268,808	1,244,552
	○ 운영비	22,153	22,596	23,048	23,509	23,979	115,285
□ 총 비용		251,931	261,565	271,576	281,978	292,787	1,359,837

4. 재원조달 방안 (도비 16% 시비 84%)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40,309	41,851	43,453	45,117	46,846	217,576
시 비	211,622	219,714	228,123	236,861	245,941	1,142,261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251,931	261,565	271,576	281,978	292,787	1,359,837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김현정(☎480-518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 분	계	산 출 근 거
2027년 기준	합 계	251,931	
	인 건 비	229,778	· 기본급 160,188천원 · 명절휴가비 16,019천원 · 가족수당 1,44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16,696천원 · 퇴직적립금 16,195천원 · 사회보험 19,240천원
	운 영 비	22,153	· 기본운영비 17,153천원 · 특화사업 운영비 5,000천원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
입	과 장	박연길
안	팀 장	최선자
자	담 당 자	김현정 (480-5182)